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구 미 시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 .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구미사랑상품권은 구미시가 발행하고, 구미시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지역 내 소비를 장려하고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다. 상품권의 발행, 유통지역, 및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상품권의 훼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라. 가맹점의 등록, 상품권의 환전, 가맹점의 준수사항, 가맹점 등록의 취소, 사용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 마.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 상품권 활성화 지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바. 유통질서 확립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 사.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
- 아.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

3. 조 례 안 : 붙임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중소기업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미사랑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미사랑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구미시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구미사랑 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개별가맹점 : 구미사랑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

나. 환전대행가맹점 :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구미사랑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자

4. “사용자”란 구미사랑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미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발행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면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5천원권

2. 1만원권

④ 상품권의 도난, 분실 등의 사고와 훼손으로 사용 불가능한 화폐에 대해서 발행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구미시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시장은 관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구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시장과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상품권의 훼손 등) ① 상품권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시장은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 사용자는 구미시의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 금액 또는 물품 등의 수량이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입력된 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판독을 통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제8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느 하나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제1호의 “사행산업”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3호의 “불법사행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그 밖에 가맹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상품권의 환전) ①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자는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②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에 한하여 상품권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경우에는 상품권의 환전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구미시와 계약한 사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시장은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맹점이 제8조제2항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구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2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시장은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의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40만원, 연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에서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과 협약을 통하여 정할 수 있다.

⑤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시장이 보전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유통질서 확립) 시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환수 조치) 시장은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판매대행점,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2. 사용자가 제1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생략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 카. 생략

2. ~ 3. 생략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 하. 생략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 6. 생략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기관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마.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4. “전자금융업자”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회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 ~ 22. 생략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가. 카지노업 :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업

나. 경마 :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다. 경륜·경정 :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륜과 경정

라. 복권 :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복권

마. 체육진흥투표권 :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바. 소싸움경기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

2. 생략

3. “불법사행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해당 사행산업과 관련하여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은 제외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삭제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
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구미사랑 상품권 제작 및 홍보, 가맹점 모집, 전산시스템 구축, 판매·환전 수수료, 할인보상에 따른 세출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구미사랑 상품권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제작비, 홍보비, 인건비, 시스템 구축비, 각종 수수료, 할인 보상 등에 대하여 시비 지원을 추계함.
- 추계기간은 2019년도를 1차년도로 시작하여 향후 5년간 추계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구분							
세 출	인건비	70,862	-	-	-	-	
	일반운영비	446,750	605,750	605,750	605,750	605,750	2,869,750
	연구개발비	16,500	16,500	16,500	16,500	16,500	82,500
	기타보상금	8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4,000,000
	소 계	1,334,112	1,422,250	1,422,250	1,422,250	1,422,250	7,023,112
□ 총 비용		1,334,112	1,422,250	1,422,250	1,422,250	1,422,250	7,023,112

4. 재원조달 방안 : 시비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국 비						
도 비						
시 비	1,334,112	1,422,250	1,422,250	1,422,250	1,422,250	7,023,112
민 간						
기 타						
합 계	1,334,112	1,422,250	1,422,250	1,422,250	1,422,250	7,023,112

5. 부대의견 : 2020년 이후 세출예산은 추정비로서, 여건에 따라 재정 소요액도 변동이 생길 수 있음.

6. 작 성 자 : 경제기획국 일자리경제과 이혜선(480-2633)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비용추계 상세내역

- 가맹점 모집단 인건비 등 : 71,102천원
- 각종 홍보비 : 285,750천원
- 판매대행수수료·환전수수료 : 각 80,000천원 (2020년부터 각 160,000천원)
- 명칭 및 디자인 공모전 시상금 및 심사 수당 : 3,800천원
- 전산시스템 구축 : 16,500천원
- 관리프로그램 및 바코드 리더기 구입 : 46,800천원

소관 실·과		일자리경제과
입 안 자	과 장	김 회 식
	담 당	김 규 환
	담 당 자	이 혜 선 (480-2633)